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통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강승현 (042-481-7851)

참고1 관련 공고문

관세청 공고 제2026 - 27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3.

관 세 청 장

할당관세품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자동차 휘발유	2710.12-1000	2026.3.13. ~ 2026.5.12.
경유	2710.19-3000	
등유	2710.19-2010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참고2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석유제품 수입량(내수용에 한함)

(단위 : 톤)

품목(HS10단위)	'23년	'24년	'25년	'25.2월	'26.2월	동기대비
자동차휘발유 (HS2710.12-1000)	15	16,582	16,608	-	1	-
경유 (HS2710.19-3000)	53,053	37,184	28,444	6,235	3,422	-45.1%
등유 (HS2710.19-2010)	0.6	0.2	0.6	0.1	0.05	-20.1%